

「2024년도 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」 지원과제 모집 공고

대량조리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푸드테크 로봇 기반의 단체급식 실증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「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」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일
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☐ (사업명) 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
- ☐ (사업목적) 대량조리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푸드테크 로봇 기반의 단체급식 실증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대량조리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대 전인 및 로봇 시장 확대
- ☐ (사업내용) 대량급식 조리환경 內 푸드테크 로봇 실증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로봇 융합모델 검증 및 실증 지원
- ☐ (과제 수행기간) '24. 9월 ~ '25. 11월 (약 15개월)
 - * (1단계) '24. 9.~12. (4개월) / (2단계) '25. 1.~11. (11개월)
 - * 과제 연차평가('24.12)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여부 결정 예정. 1단계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2단계 계획(안) 실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
- ☐ (지원규모) 국비 총 20억원 내외 규모, 총 3개 과제 내외 선정(1단계)

2. 지원분야 및 대상

- (지원분야) 대량급식 시설 내 조리로봇 활용 조리지원이 필요한 취반, 국·탕, 볶음, 유탕 공정 분야 대상 푸드테크 로봇 지원
- 공정별 전체 조리과정 중 일부 필요한 작업에 로봇을 대체하여 로봇 효과성 및 대체 경제성 분석 지원

구분	주요 내용	예시
취반 공정	○ 원곡 이동 및 투입, 세미(불량검출), 계량, 계수, 이송, 적재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	
국·탕 공정	○ 사전작업(물 투입 및 가열), 재료 투입, 교반 작업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	
볶음 공정	○ 사전작업(예열), 재료 투입, 교반, 소분 계량 작업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	
유탕 공정	○ 사전작업(예열, 원재료 준비), 재료 투입, 유탕, 계량, 탈유, 배출 작업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	

* 조리흙 유발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작업공정 우선 지원하며, 최소 2가지 공정 실증 필수

- (실증내용) 대량조리 현장 분석 및 로봇 서비스모델 설계 이후,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하는 연차 사업(1~2단계) 진행

(1단계, '24) 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 설계	(2단계, '25)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
▶ 급식시설 현장 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▶ 맞춤형 푸드테크 로봇 융합모델 설계 ▶ 식수인원 기반 실증 데이터 수집 계획 ▶ 서비스로봇 제작(입고) 및 인프라 구축	➔ ▶ 현장맞춤형 서비스 로봇 도입 및 실증 ▶ 로봇 실증을 통한 데이터 분석(효과성, 경제성)

□ (지원대상) 수요처, 공급기업(로봇기업, SI기업), 기관 및 협·단체 간 컨소시엄

○ (컨소시엄 구성)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을 추가하여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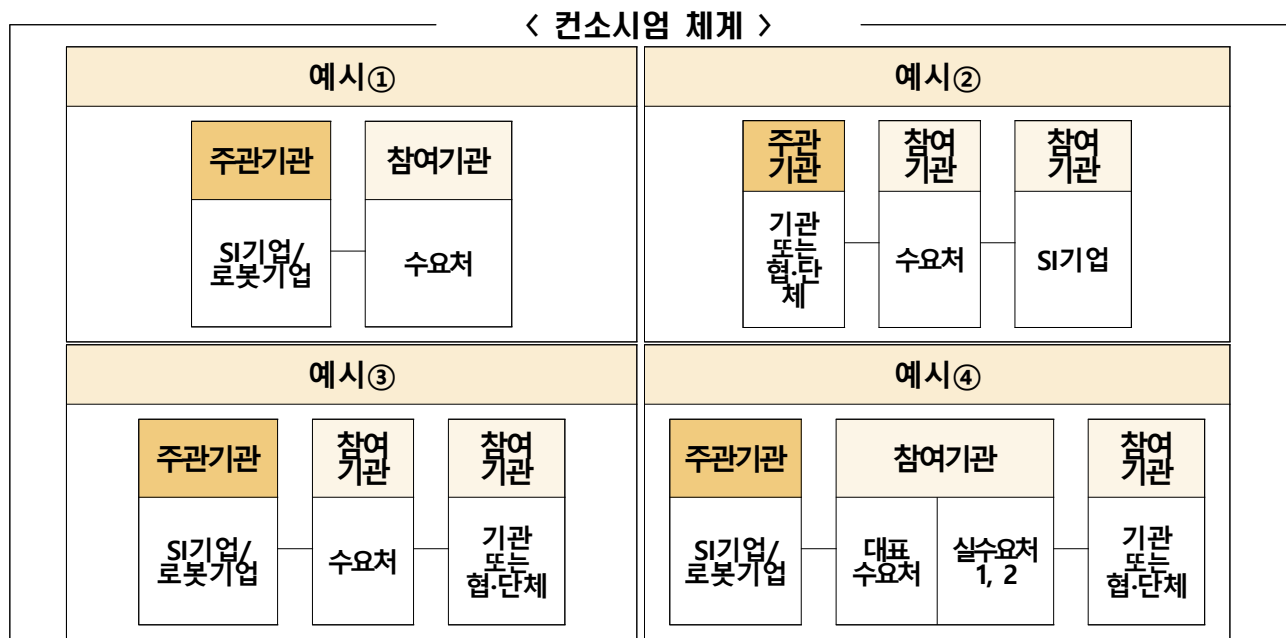
- (주관기관) SI기업/로봇기업(로봇 통합관제)/기관 및 협·단체(활용모델 구현 총괄)
- (참여기관) 수요처(대량급식시설 보유기관), 공급기업(로봇 및 SI기업)

* 수요처: 다종로봇 활용 실증이 가능한 대량조리시설 보유 학교/기관/기업 등

* 주관 및 참여기관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

* 실수요처에 2대 이상 로봇이 도입될 경우, 푸드테크 로봇 연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SI기업·로봇기업 참여 필수

* 기타 기업/기관, 연구기관, 대학 등 필요시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



○ (구성요건) 주관/참여기관별 요건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성

- * (대상기관) 법인 기업·기관을 대상으로 하며,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
- 주관 및 참여기관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
- * (SI기업) 다종로봇 연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SI 역량을 보유한 기업
- * (수요처) 푸드테크 로봇 활용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하며, 대량급식시설을 보유한 기관/기업/지자체 등(중소·중견기업, 대기업, 국가기관/지자체/공공기관, 기타 비영리기관 등)
- * (로봇기업) 로봇제품을 보유하고 실증할 로봇 기업
- * (유관기관) 타 기업/기관, 연구기관, 대학 등은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* (스타트업)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(창업 예정기업 불가)

3. 지원 규모 및 내용

- (지원규모) 1단계, 총 3개 내외 과제 및 총 20억원 내외 규모 지원
 - 단계별 70% 국비 지원으로 과제당 9억원 내외 지원
 - (1단계) 과제당 7억원 내외, (2단계) 과제당 2억원 내외
 - * 정부예산(안), 접수된 총 지원과제 수, 과제별 수요처 수, 긴급한 내·외부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여 **사업비조정위원회 검토 후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**
 - ** 사업비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**컨소시엄별 차등 지급될 수 있음**
 - *** 지원 규모는 국비 기준이며, 전체 사업비의 30% 이상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
 - **** 사업비 상세 구성기준은 '(별첨) 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 안내서' 참고
- (지원조건) 1단계 연차평가 시점까지 로봇 제작 및 인프라 구축(도입 구역 기반 공사 등)이 가능하며, 2단계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(통합관제 연동 로봇 활용 조리 공정 2개 이상 실증) 가능한 컨소시엄
 - (로봇실증) 사업 종료시점까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**로봇 활용 조리공정 최소 2개, 실수요처별 로봇 최소 1~2대 이상 실증 완료** 필수
 - (예외사항) 불가피한 사유로 하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(인정) 여부 결정
 - (컨소시엄 구성) 불가피한 사유로 SI기업이나 협·단체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어 수요처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 경우
 - (사업비 구성) 단계별 전체 사업비의 30%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 컨소시엄
 - 컨소시엄 내 부담 비율은 자율 설정이나, 수요처가 포함된 참여 기관에서 50% 이상 부담 必)
- (공모 방식)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
 - (자유공모) 다종·다수 푸드테크 로봇 활용 실증이 가능한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 수행

- (지원내용) 대량조리 현장 분석 및 로봇 활용모델 설계를 우선 지원하고 현장맞춤형 로봇 융합모델 제작 및 실증 지원

1단계 단체급식 현장분석 및 현장맞춤 융합모델 설계

- (지원내용) 수요처 분석, 맞춤형 로봇 설계 등 서비스로봇 모델 분석·설계 및 로봇 제작 비용, 수요처 내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
 - 로봇 연관 협회, 기타 협·단체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로봇 융합 모델 발굴 및 데이터 수집 계획 총괄 검토
- (결과물) 현장분석 내용이 포함된 푸드테크 로봇 활용모델 설계(안), 실증 시나리오 및 효과성 검증 계획(안), 로봇 시제품

* (예시) 400식 단체급식 대상 로봇 활용모델 설계(안), 공정별 로봇 투입 효과 검증(안)

2단계 현장맞춤 로봇 융합모델 실증 및 로봇 활용 데이터 분석

- (지원내용) 수요처 맞춤형 로봇 활용모델 실증 및 식수인원별 (또는 메뉴별) 데이터 검증 비용
- (결과물) 조리 로봇 융합모델 실증 결과보고서(실증 결과 및 시사점 등), 대량 급식 데이터 분석 및 활용(안), 로봇 활용 효과성·경제성 분석 결과보고서

< 일정별 결과물 도출 일정(안) >

구분	추진업무	추진 일정							
		'24년 3분기		'24년 4분기		'25년 1·2분기		'25년 3·4분기	
1단계	급식시설 현장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								
	맞춤형 푸드테크 로봇 융합모델 설계								
	식수인원 기반 실증 데이터 수집 계획(안)								
	현장맞춤형 서비스로봇 제작 및 인프라 구축								
	진도 실적보고서								
2단계	자체 및 현장 시운전								
	서비스 로봇 활용모델 실증								
	최종 실증·데이터 결과보고서								

4. 유의사항 및 선정제외

□ 유의사항

- 각 단계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다중·다수 로봇 실증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
- 국비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 예정이나 단, “이행보증보험” 제출 필수(미제출시 선정 취소)

□ 선정제외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실증 가능한 제품이 없어 연구개발 성격인 과제이나, 공고일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과제를 既추진하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비 지급 요청 시점까지 제출 불가능한 경우
- 민간부담금(현금)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
- 1단계 연차평가 시,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2단계 계획 실현이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

○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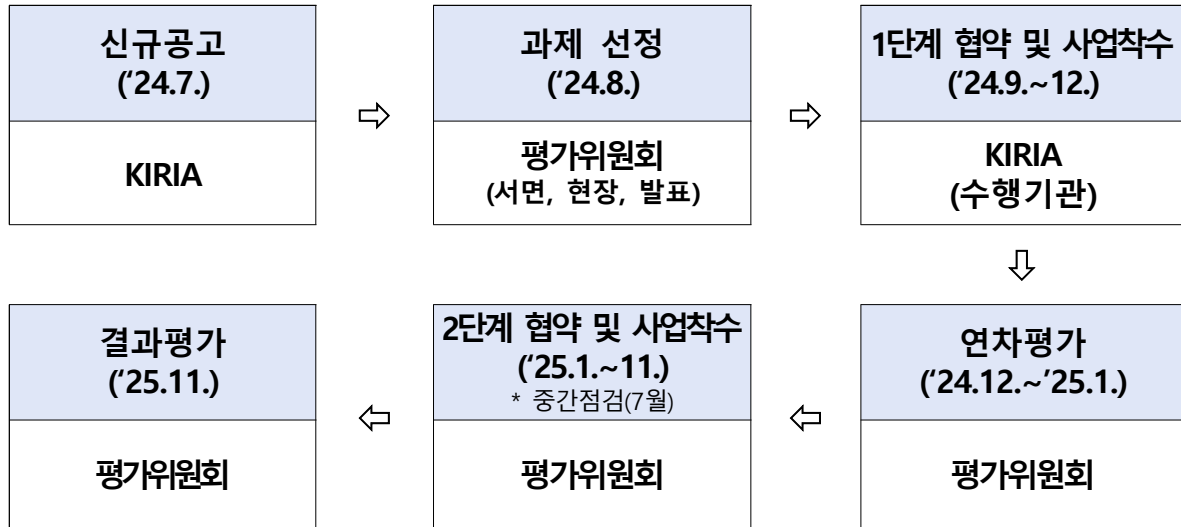
구분	사전지원제외	사후관리
검토 기준	1. 기업의 부도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*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.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*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.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인 기업 *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*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	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.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 2.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% 이하 3. 부분자본잠식 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 5.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한정”
조치	○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의 경우 “사전지원제외 대상”으로 처리	○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“사후관리대상”에 해당됨을 보고 ○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“사후관리대상과제”로 등록하여 관리하고,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- 재심사 결과 “사전지원 제외” 대상에 해당된 경우,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

※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본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기준의 경우 「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」과 차이가 있어 ‘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’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선함

5. 선정 절차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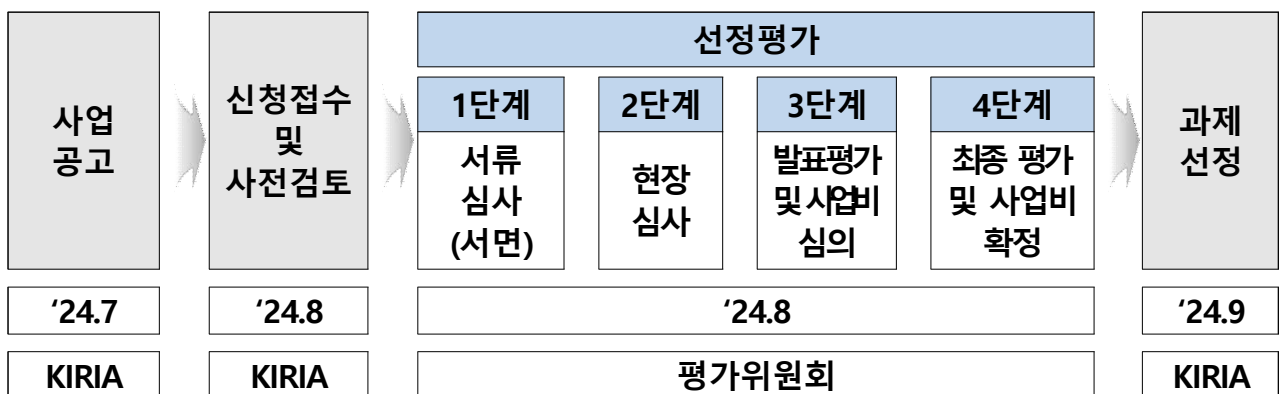
□ 사업 수행 절차



* 1단계 연차평가('24.12.)를 통해 2단계 연계 지원 여부 확정

* 제시한 계획(안) 실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

□ 선정 절차



□ 평가 방법

- (평가 주체) 1단계 접수 과제 필수 제출서류 및 재무심사 등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, 2단계 서류 및 발표평가는 선정평가위원회* 구성

* 학회·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로봇·표준, 규제 및 수요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(비공개)

- (사전검토) 진흥원 과제 담당자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* 여부 검토

* 제출 서류 확인 및 컨소시엄 구성요건 등 신청 자격 등 사전 검토

- (①서류심사) 사전검토 완료 신청서 대상으로 재무심사를 통해 사전지원제외 여부* 등 적부 심사(서면)

*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(공고문 p.7,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)

- (②현장심사) 수요거점 중심의 로봇 도입 현장 인프라 확인 및 필요시 로봇 기업의 시설·공장 현장 확인 병행

- 현장심사 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계획의 구체성	◦ 수요처의 로봇 활용 의지와 활용 계획은 명확한가?
	◦ 로봇 투입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가?
	◦ 로봇 실증 추진 체계는 적절하게 되어있는가?
제품의 적정성	◦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?
	◦ 제시한 로봇 제품비용은 적합한가?
	◦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?
	◦ 사업기간 내에 수요처가 요구한 성능(커스터마이징)으로 완성이 가능한가?
수행능력	◦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
	◦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?
	◦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?
	◦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?
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◦ 로봇도입비,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비를 구성한 경우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?
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	◦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?
	◦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(활용모델)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?

*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의견(적격, 미흡, 부적격) 도출 후 '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' 기초자료로 활용

○ (③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)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 금액 심의

- (평가점수 산정) 평가점수는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,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

*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,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

** 사업 수행책임자 미발표 또는 발표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처리

- (재검토요청서 접수) 진흥원은 심의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,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*를 접수

*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 금액 산정

** 심의 결과(사업비 규모, 사업계획서 등)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를 접수

- 발표평가 기준

구분	평가지표	배점
목적 부합성 (25)	◦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선정의 당위성	15
	◦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	10
추진계획의 적절성 (55)	◦ 과제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·구체성	20
	◦ 수요처(거점)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 등 제품 실증 추진 계획의 적절성·구체성	15
	◦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절성	10
	◦ 사후관리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	10
수행능력 (20)	◦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(인프라, 인력, 기술, 제품 등)	10
	◦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	10
합 계		100

*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

- **(④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)** 선정평가위원회 중심 최종평가 진행 후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
 - **(최종평가)** 종합결과(우선순위, 사업비 심의결과) 및 재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
 - *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,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
 - **(종합결과서)** 선정평가위원회는 종합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의견과 최종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명기
 - * 사업계획서 內 평가의견 등 수정·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협약 예정이며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, 탈락 처리하고 후순위 과제와 협약 추진
- **(협약체결)** 진흥원과 컨소시엄(주관, 참여기관) 간 전자협약 체결
 - * 사업관리시스템(www.kiria.org/pms)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(범용 공인인증서 필요)
- **(국비지급)**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*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
 - * 서류(사업비집행 기관별) : 이행보증보험,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등
 - **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, 지방비의 경우 지방비 납입확약서 內 확약일 기준 입금 필요
 -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사용, 신설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
 - * 총사업비(국비 및 민간부담금)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·운영되어야 함 (기존 계좌,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)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- ☐ (공고기간) '24. 7. 1.(월) ~ '24. 7. 30.(화), 16:00까지
- ☐ (접수기간) '24. 7. 25.(목) ~ '24. 7. 30.(화), 16:00까지
- ☐ (접수방법) 사업관리시스템(PMS)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**온라인 접수**(오프라인 제출 불가)

○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(공고번호 KIRIA-PMS-2024-032호)

※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[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\(www.kiria.org/pms\)](http://www.kiria.org/pms) '공지사항' 내 매뉴얼 참고

○ 주의사항

- ① 사업관리시스템(www.kiria.org/pms) '과제신청'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
-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
-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
- ④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(화면캡처)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
[메일제목] 2024년 단체급식 대량 조리 로봇 시범사업 신청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

○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	제출			비고
		지자체	기관	기업	
1	사업계획서	주관기관			양식 1
2	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○	○	○	양식 2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○	○	양식 3
4	참여의사 확약서	○	○	○	양식 4
5	지방비 매칭 확약서	○	-	-	양식 5(해당 시 제출)
6	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	○	○	○	양식 6
7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○	○	○	-
8	법인등기부등본	-	○	○	-
9	최근 2년간('22~'23) 회계감사보고서 (감사의견 포함) 또는 표준재무제표(날인본 표지 포함)	-	○	○	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제출 (비영리기관 제외)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-	○	○	-
11	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(재직증명서)	○	○	○	-
12	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(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)	○	○	○	-
13	참여인력 근무 확약서	○	○	○	양식 7
14	신규 참여연구원 채용(예정) 확인서 ²⁾	-	○	○	양식 8(해당 시 제출)
15	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	-	-	○	SI기업/로봇기업
16	로봇 및 통합관리시스템 단가 산출서 (제조사 작성, 커스터마이징 가격 포함) * 예시 : 제조사 가격 구성표(공개가능 범위), 국내외 유사 제품 간 가격 비교표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	-	-	○	제작단가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, 예시를 참고하여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

- 1) 필수 제출 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,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/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(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,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)
- 2) 신규 인력 인건비 산정하였을 경우 제출

※ 위 제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(기관)은 추후
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(보증보험증권, 청렴이행각서, 보안서약서 등 제출)

7. 추진 일정(안)

추진절차	추진시기	주요내용	비고
사업 공고	'24.7월 (30일간)	· 공고 시행	KIRIA
↓			
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	8월	·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·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	신청기관→KIRIA
↓			
과제 선정	8월	· 신청서 관련 사전 전문가 심층 검토 · 로봇 도입 수요처 방문, 현장 실태조사 · 사업내용,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·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	평가위원회
↓			
선정결과 통보	9월	·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	KIRIA↔선정기관
↓	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9월	·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	KIRIA↔선정기관

* 추진 일정은 신청 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8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☐ 「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9조, 제41조
- ☐ 「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」 ('23.3., 범부처 합동)
- ☐ 「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('24~'28)」 ('24.1., 범부처 합동)
- 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('24.5.13.) (별첨 참고)

*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,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

9. 문의처

- ☐ (사업 문의) 로봇혁신사업본부 서비스융합팀 이가영 선임

구분	소속	담당자	내선번호	이메일
사업 관련	서비스 융합팀	이가영 선임	053-210-9603	ga0@kiria.org
시스템 관련 (과제 신청 및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)	기획예산팀	조승미 선임	053-210-9519	smcho@kiria.org
	호원소프트	시스템 고객센터	070-4047-7287	-

10. 기타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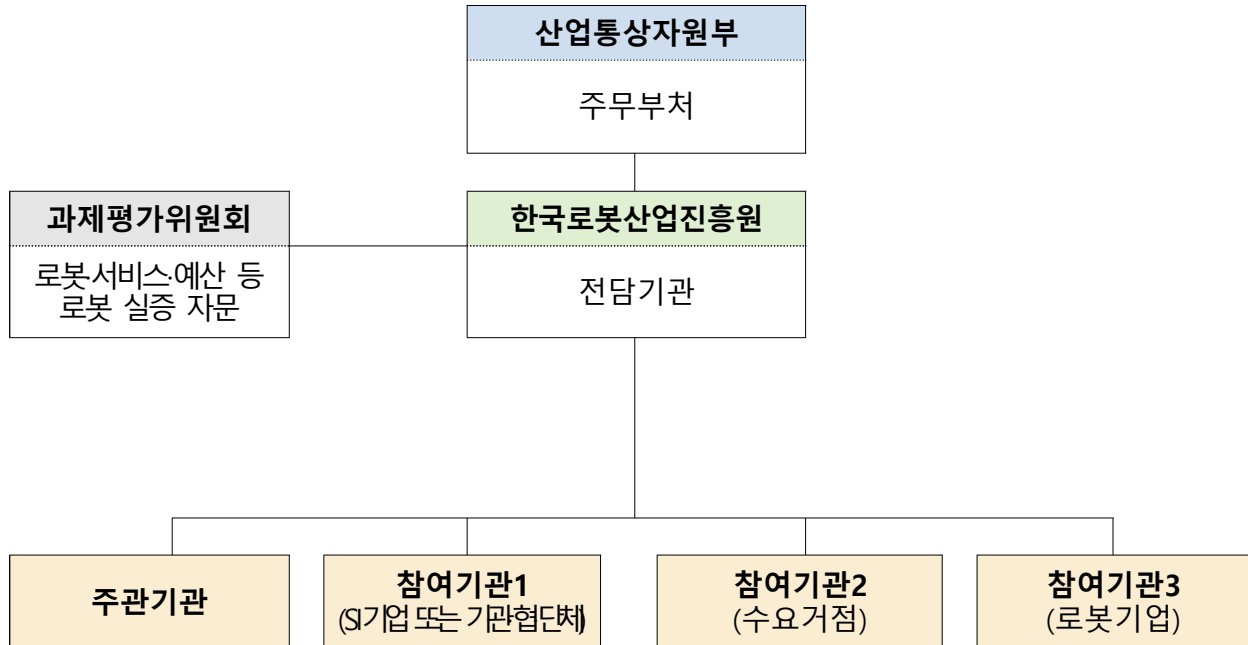
- ☐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
- ☐ 사업 수행기간에 발생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공급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 성과활용기간에는 원활한 로봇 활용 및 운영을 위해 진흥원의 승인 후에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 - 또한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
- ☐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☐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, 정부출연금의 경우 단계별 재심의를 통해 지급 예정임
 -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,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
- ☐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(PMS), 사업비관리시스템(CMS)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,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- ☐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
- ☐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, 전시,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 -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·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☐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

※ 기타 세부 내용은 「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」 참고

참고1

사업 수행체계(안)

□ 추진체계



【수행주체별 역할】

구분	수행 내용	역할
산업통상자원부	• 사업총괄, 정책 및 예산 등 총괄 조정	
한국로봇산업진흥원	• 사업기획 · 평가 · 관리, 예산 확보 및 편성	전담기관
과제평가위원회	• 과제계획 평가 및 컨소시엄 선정,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• 과제 범위 및 예산 조정, 사업비 적정성 검토	
주관기관	•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수립(사업 주관) • 과제진행 및 현황·결과 보고 등	SI기업, 로봇기업 기관 및 협단체
참여기관	•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참여(사업 참여)	수요거점, 로봇기업

참고2

사업 절차 및 시기(안)

추진절차		추진시기	주요내용	비고
사업 공고		'24.7월 (30일간)	· 공고 시행	KIRIA
↓				
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		8월	·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·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	신청기관→KIRIA
↓				
사업 선정	서류심사	8월	· 신청서 관련 사전 전문가 심층 검토	평가위원회
	현장심사		· 로봇 도입 수요처 방문, 현장 실태조사	
	발표평가		· 사업내용,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	
	최종평가		·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	
↓				
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		9월	·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· 과제 협약 체결 및 선정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	KIRIA↔선정기관
↓				
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설계	사업 착수 및 사업비 지급	9~12월	· 이행보증보험 발급·제출 (컨소시엄 → 진흥원) 및 국비 지급 ·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	KIRIA
↓				
연차평가		12월	· 진도점검 및 진행사항 평가	평가위원회 및 KIRIA
↓				
현장맞춤 로봇실증 및 데이터 분석	2단계 전자협약 및 사업 착수	'25.1~11월	· 사업비 지급, 과제 진행상황 등 현장점검 진행 (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포함)	평가위원회 및 KIRIA
↓				
최종평가		'25. 12월	· 사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	평가위원회 및 KIRIA